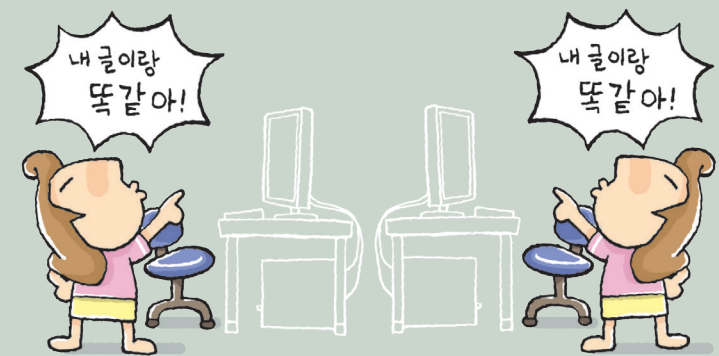


# 17 저작물 등의 무단사용과 지적재산권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 헌법 제22조 제2항

## Case 1

주로 '맛집정보'를 블로그에 올리는 수미씨는 1일 조회수가 만 건을 넘는 파워 블로거다. 어느 날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예전에 방문하였던 맛집에 대한 글이 있어 찾아보았는데, 그 홈페이지에는 수미씨가 예전에 작성한 글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마치 운영자가 작성한 것처럼 게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다른 글도 살펴보니 여기저기의 유명 블로그에서 글과 자료를 가져와 운영자 자신의 것처럼 올려놓은 것이었다. 수미씨는 허락은커녕 인용표시도 없이 남의 블로그 글을 훔쳐가는 당신은 예의 없는 사람이라고 댓글을 남겼다.



## Case 2

사하라사막 남쪽의 가난한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에이즈 바이러스로 고통을 받고 있다. 에이즈에 대한 치료법은 없지만, 다행히 에이즈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약은 개발되었다. 에이즈 환자의 기대수명을 10년에서 20년 정도로 늘려주는 획기적인 약이었다. 문제는 이 약이 매우 비싸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 국가 중 어느 나라도 약을 구입해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약값이 비싼 이유가 원재료의 가격 때문이 아니다. 특허 때문이었다. 이 약을 개발한 제약회사는 적어도 20년 이상 특허권을 가진다. 물론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제약회사가 들인 그 동안의 비용과 노력은 충분히 보상되어야겠지만, 그 때문에 환자들이 약을 살 수 없다면 소용이 없는 일이다.



### 제퍼슨의 등잔불 비유

“자연이 만든 것 중에 배타적 재산권과 가장 친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아이디어라 불리는 사교력의 작용이다. 개인이 혼자 간직하는 한 그것은 그의 배타적 소유이지만, 밖으로 내뿜는 순간 모든 사람의 소유가 되고 누구도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 그것의 또 다른 특징은, 모두가 전부를 가지고 있기에 아무도 적게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누가 나의 아이디어를 전달받았다고 해서 나의 것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누가 내 등잔의 심지에서 불을 붙여 갔더라도 내 등잔불은 여전히 빛나고 있는 것이다. 도덕적으로 서로를 교육하며 사람들의 형편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온 세상으로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확산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은 자연이 준 특유하며 자비로운 선물일 것이다. 구석구석을 비추며 사방으로 뿜어나가는 빛처럼, 우리가 그 속에서 숨쉬고 움직이고 그리고 존재하는 공기처럼, 자연은 배타적 소유나 제한이 없도록 관념을 만들었다. 발명은, 본질적으로, 재산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813년 토머스 제퍼슨이 아이작 맥퍼슨에게 보낸 편지, <http://etext.lib.virginia.edu/jefferson/quotations/jeff1550.htm> 번역은 김도현, 「정보사회와 평등문제: 보편적 서비스의 '소프트'한 의미를 위하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정기심포지움 발표문, 2000. 4. 참조.

##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예술가의 권리를 보호하는 이유

헌법은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권리를 모두 아울러 '지적재산권'이라고 부르는데, 구체적으로 저작자나 예술가의 권리는 저작권법으로, 발명가와 과학기술자의 권리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등으로 보호하고 있다.

수미씨의 사례와 같은 파워 블로거의 글도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굳이 저작권법을 말하지 않더라도 수미씨의 블로그 글을 그대로 베껴서 자신의 글로 둔갑시킨 사람은 무형의 가치에 대해 일종의 도둑질을 한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을 자신이 한 것처럼 속였고, 그것을 통해 돈을 벌기도 하고 명예를 얻기도 했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그렇다면 헌법이 특별히 저작자나 발명가·예술가 등의 권리를 보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수미 씨의 블로그 글과 같은 저작물들이 모여 나중에 보다 수준 높은 저작활동으로 발전하고, 그것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의 문화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저작물이나 예술작품, 발명품 등 인간의 지적 노력의 산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면에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 국가가 이들 가치를 구현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문화가 풍성해지고,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이라는 공익을 아울러 실현할 수 있다. 아마도 제약회사의 에이즈 치료제 생산 공정을 특허권으로 보호하여 독점적인 이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제약회사는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여 에이즈 치료제를 개발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국가가 특허를 통해 에이즈 약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줌으로써 에이즈 치료제의 개발이라는 공익이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이다.

## 지적재산의 자유로운 이용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그런데 문제는 에이즈 치료제가 분명히 가난한 국가의 에이즈 환자들에게도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과학기술이 발달한 선진국에서 개발된 치료제가 정작 약이 필요한 가난한 나라들에서 비싸게 팔리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신약개발 등 과학기술의 진보를 주도하는 선진국들에 의해 강화된 특허권 때문이다.

만약 아프리카의 국가들이 특허를 받은 제조공정을 모방해서 비슷한 성분의 에이즈 치료제를 만들어 싸게 공급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분명히 특허권을 가진 국가와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에서 특허권과 관련한 국제분쟁이 발생할 것이다.

이들 국가들 사이에는 특허권에 대한 보호의 정도를 두고 첨예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 선진국들은 새로운 과학기술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의 정도를 더욱 강화할 것을 주장하며, 반대로 치료제가 필요하거나 치료제를 생산하여 더 싼 가격에 팔기를 희망하는 국가들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의 정도를 완화함으로써 일정한 기간 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지적재산을 이용할 수 있기를 희망할 것이다.

오늘날 다자간 또는 양자간의 각종 무역협정에서 특허 등 지적재산에 대한 보호

의 정도가 주요한 쟁점이 되는데, 협상의 당사국은 자국의 산업구조와 소비구조 등을 고려하여 서로 자국에 유리한 조건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 저작자 보호와 자유로운 이용의 조화

헌법이 저작자·예술가·발명가 그리고 과학기술자들의 권리, 즉 지적재산권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사회의 발전을 이끌고 촉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지적 활동의 결과물에 대한 공동의 활용이 제한됨으로써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도 함께 있음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의 정도를 어느 수준까지로 할 것인지는 우리의 경제수준과 산업구조 등을 고려하여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법률로써 정하게 된다.

### 생각해 볼 문제

지적재산권 공유를 주장하는 copyleft 운동이 있다. 지적재산권을 공유하여 얻는 이익과 지적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무엇이 있을까?